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30
----------	------

발의연월일 : 2024. 10. 31.

발 의 자 : 조정훈 · 김미애 · 최수진
김대식 · 인요한 · 김용태
유상범 · 정성국 · 박준태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 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5조의5(과건근무) ① 사립학교</u> <u>(「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u> <u>학교는 제외한다) 교원의 임용</u> <u>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u> <u>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u> <u>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u> <u>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u>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u> <u>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u> <u>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u> <u>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u> <u>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u> <u>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u> <u>필요하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u> <u>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u> <u>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사인</u> <u>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u> <u>그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u> <u>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제2</u> <u>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학</u>

교의 장을 포함한다)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